



제 419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낙시어선 영업구역에서 연접 시·도지사 관할구역 제외〉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85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에서 연접 시·도지사 관할수역 제외	3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0. 31.

3. 회 부 일 : 2024. 11.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영업구역을 벗어나 연접한 다른 시·도 관할 수역까지를 영업구역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업자의 영업에 대한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그 예외를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차도에 무분별하게 낙시인을 하선시켜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낙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낙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결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낙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영업구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에서 연접 시·도지사 관할 수역 제외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연접하거나,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영업구역) ① (생략)	제27조(영업구역)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제1항에 따른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u>
<u>② · ③</u> (생략)	<u>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
	<u>부칙</u>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7조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서 영해에 해당하는 수역으로 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시·도 간 수역에 대해 공동 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영업구역도 영업구역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해당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법률상 영업구역 내 영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컨대, A도에 선적항을 둔 낚시어선이 연접한 B도에 소재한 낚시터에 낚시인을 하선시켜도 단순히 낚시인을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한 것인 때에는 영업구역 내 행위로 봄.

□ 해당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은 선적항을 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 아니어도 연접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낚시인을 하선시키는 영업을 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연접한 시·도에서 이동해 온 낚시인들의 낚시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 등의 갈등요소가 존재하고, 낚시어선의 원거리 영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과
연접하거나,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영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시행령으로 허용되어 온 기존
영업구역을 폐지하고,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을 둔 시·도의
관할수역으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그 입법의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다음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① 우선, 낚시어선이 지금과 같이 연접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2002년 「낚시어선업법 시행령」¹⁾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부터로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러한 형태의
영업이 허용되어 왔으므로,

이를 금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영업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낚시
어선업자, 낚시인, 지역어업인, 관련 지자체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규모 파악²⁾과 의견수렴³⁾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다음으로, 개정안은 연접한 시·도의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1) 2012. 9월부터 기존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은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으로 대체됨.

2) 일부 사례로, 전남선적 낚시어선 757척 중 제주도 추자군도 및 사수도 인근(반경 1km 이내)으
로 운항한 항적이 있는 어선이 2024년 기준 총 94척으로 나타남.

3) 이와 관련, (사)한국낚시어선협회에서는 법 개정 시 낚시어선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므로, 기존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범위에서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은 개선하되, 법 개정에는 신중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하선시킴에 따라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발의되었는바,

현재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안전요원 승선 및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 의무 등 낚시 안전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쓰레기 투기와 관련해서도 수면 등에서의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4), 낚시어선의 안전 강화와 쓰레기 투기 금지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을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절차, 기준, 유효기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하며 선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선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 및 임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에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포획금지 채종·채종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3.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강화하는 방법으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바와 같이 시행령 제17조의 경우 법률상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규정의 보완 등의 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계 부처 등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낚시어선의 원거리 영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및 쓰레기투기 등의 방지를 위해 법률로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 다만, 조문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고, 통상 1년 전부터 예약이 이루어지는 업계 특성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어 보임.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같은 사유로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수협중앙회의 경우 개정안에 동의하되, 조문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낙시어선업 신고 현황

○ 시·도별 낙시어선업 신고 현황('18~'23)

(단위: 척)

시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543	4,595	4,536	4,422	4,383	4,293
부산	182	175	171	174	168	161
인천	228	220	233	205	194	183
울산	38	46	44	43	39	35
경기	88	94	95	90	77	73
강원	337	319	246	267	252	272
충남	1,136	1,098	1,060	997	978	978
전북	269	270	262	267	290	252
전남	724	838	860	790	791	797
경북	116	119	129	125	137	132
경남	1,208	1,198	1,202	1,210	1,172	1,145
제주	217	218	234	254	285	265

○ 규모별 낙시어선업 신고 현황('23)

(단위: 척)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293	161	183	35	73	272	978	252	797	132	1145	265
1톤미만	8								7			1
1톤-2톤미만	230	18	2	5		28	11	5	95	2	62	2
2톤-3톤미만	393	19	18	2		33	44	7	132	9	126	3
3톤-4톤미만	850	46	27	18	11	99	185	10	93	22	271	68
4톤-5톤미만	639	34	30	4	8	46	108	17	75	23	246	48
5톤-6톤미만	136	6	3	2	1	19	30	1	15	6	36	17
6톤-7톤미만	257	9	9	2	6	15	91	13	16	8	64	24
7톤-8톤미만	399	2	9	1	6	12	205	32	24	11	63	34
8톤-9톤미만	109	3	2		4		43	11	11	5	27	3
9톤-10톤미만	172	24	83	1	37	20	261	156	329	46	250	65